

# 2020년 수출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 이용 안내

회원지원실

2020. 2. 1

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수출단체보험(2종 : 중소기업 PLUS+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 보험) 가입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 1. 수출단체보험 개요

중소·중견 회원사를 대상으로, 우리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양방 계약 당사자로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, 회원사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

### (1)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

구 분	지 원 내 역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전년도 직수출실적 3,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중 회비완납 회원사</li><li>* 신청/접수 시 실적증명 제출 및 회비완납기간 확인</li></ul>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보험가입비(200 달러) 중 전액 혹은 일부지원</li><li>① 회비완납 11년 이상 : 보험료 전액지원</li><li>② 회비완납 1 ~ 10년 : 보험료 80%지원(회원사 자부담 : 4만원)</li></ul>
대상 거래 및 담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적용대상거래 : 일반수출, 가공무역, 중계무역</li><li>* 결제기간 중소기업 1년, 중견기업 180일 이내</li><li>적용위험의 종류 : 수입자 위험, 신용장 위험, 수입국 위험</li></ul>
보상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최대 5만 달러 (중소기업 95%, 중견기업 90% 보상)</li></ul>
보험요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보상한도금액의 0.4%</li></ul>
보험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가입일(부보일)로부터 1년</li></ul>
이용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전년도(또는 최근1년간) 직수출 실적 3,000만 달러 초과업체</li><li>수출자가 무역보험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</li><li>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단체보험(포괄, 준포괄, Plus+보험, 단체보험, 농수산패키지보험) 이용업체(유효기간 종료 후 가입가능)</li></ul>

보상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출기업의 사기, 고의 및 과실</li> <li>고위험 인수제한국가(소말리아, 리비아, 푸에르토리코, 시리아, 가봉, 아프가니스탄, 부탄, 베네수엘라, 팔레스타인, 예멘) 또는 이란에 수출한 경우</li> <li>보험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초 만기일로부터 30일 이상 결제가 지체되고 있는 수입자에 대한 수출거래</li> <li>수출자(피보험자)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</li> </ul>
--------	--

## (2) 수출안전망 단체보험

구 분	지 원 내 역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중 회비완납 회원사</li> <li>* 신청/접수 시 실적증명 제출 및 회비완납기간 확인</li> </ul>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험가입비(20 달러) 전액 (회비납부연차와 무관)</li> </ul>
대상 거래 및 담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용대상거래 : 일반수출, 가공무역, 중계무역</li> <li>* 결제기간 1년 이내</li> <li>적용위험의 종류 : 수입자 위험, 신용장 위험, 수입국 위험</li> </ul>
보상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대 2만 달러 (95% 보상)</li> </ul>
보험요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상한도금액의 0.1%</li> </ul>
보험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입일(부보일)로부터 1년</li> </ul>
이용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년도(또는 최근1년간) 직수출 실적 10만 달러 초과업체</li> <li>수출자가 무역보험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</li> <li>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단체보험(포괄, 준포괄, Plus+보험, 단체보험, 농수산패키지보험) 이용업체(유효기간 종료 후 가입가능)</li> </ul>
보상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출기업의 사기, 고의 및 과실</li> <li>고위험 인수제한국가(소말리아, 리비아, 푸에르토리코, 시리아, 가봉, 아프가니스탄, 부탄, 베네수엘라, 팔레스타인, 예멘) 또는 이란에 수출한 경우</li> <li>수출자(피보험자)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</li> </ul>

## <지원사항 요약표>

①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		
지원기준	작년 수출실적(직수출) 3천만 달러 이하	
보상한도	50,000 USD (보상비율 : 중소기업 95%, 중견기업 90%)	
보험료/ 보험요율	200 USD (보험요율 : 보상한도금액의 0.4%)	
협회지원율/ 업체부담액	로얄 / 골드 (회비완납 11년 이상)	실버 (회비완납 1~10년)
	100% (전액지원)	80% (업체자부담: 4만원)
② 수출안전망 단체보험		
지원기준	작년 수출실적(직수출) 10만 달러 이하	
보상한도	20,000 USD (보상비율 : 95%)	
보험료/ 보험요율	20 USD (보험요율 : 보상한도금액의 0.1%)	
협회지원율	100% (전액 지원)	

### < 신청제한 기업 >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
- 휴·폐업 중인 업체
- 대외무역법 제53조, 제53조의2 및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,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

※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종료

## 2.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

### <시행절차>

- ① 사업 시행공고 : 무역협회 홈페이지([www.kita.net](http://www.kita.net)) 공지란 참조
- ② 가입신청 (회원사,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)
- ③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 (회원사)
- ④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 (협회→무역보험공사)
- ⑤ 보험심사 및 후보업체선정 (무역보험공사)
- ⑥ 후보완료 및 회원사 안내 (무역보험공사→회원사)
- ⑦ 심사탈락업체 자부담금 환불 (협회→회원사)

## (1) 가입신청

- 신청 기간 : 사업공고일( '20. 2월) ~ 12월(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종료)

※ 사업기간 중 접수 완료 업체만 인정  
※ 신청문의: 트레이드콜센터 ☎1566-5114

- 지원 신청 방법  
- 무역협회 홈페이지([www.kita.net](http://www.kita.net)) 공지란에서 온라인 신청

### ※ 보험(2종) 선택 및 보험료 지원비율 확인 방법

#### ① 수출실적 확인 → 이용가능 수출보험 확인 및 선택

- 가.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→ 수출 안전망, 중소기업 플러스
  - 나.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초과, 3천만 달러 이하 → 중소기업 플러스
- \* 수출실적 확인 및 증빙 발급 : 무역협회 홈페이지(kita.net) 참조  
(바로가기 : <https://membership.kita.net/cert/oncert/expImpCertGuide.do>)

#### ② 회비납부 연차 확인 → 보험료 지원률 결정

- 가. 회비완납 11년 이상 : 보험료 전액지원
  - 나. 회비완납 1 ~ 10년 : 중소기업플러스 보험료 80%지원(회원사 자부담 : 4만원),  
안전망 보험료 전액지원
- \* 회비납부 연차 확인방법 : 무역협회 홈페이지(kita.net) 참조  
(바로가기 : <https://membership.kita.net/cert/mem/memCertReceipt.do>)

## (2)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

- 입금계좌 : 우리은행 / 1005-403-142428(예금주 : (사)한국무역협회)  
\* 입금자명은 반드시 회사명으로 기재하고 안내받은 자부담액만 입금요망  
\* 자부담 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.  
(은행 이체증/입금증, 보험증권으로 증빙 대체)

## (3)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

- 청약대상자 확정 : 지원가능 대상자 중 보험료 자부담금이 없거나(전액지원),  
보험료 자부담금을 납입한 회원사
- \* 자부담금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청약에서 제외
- 청약횟수 : 월 2회(매월 초 및 중순)

(4) 보험가입 심사 및 후보대상 업체선정(무역보험공사)

- 보험가입 심사 및 후보대상 업체 선정 : 약 2주 소요

(5) 후보완료 및 회원사 안내(무역보험공사 → 회원사)

- 후보안내 방법 : 이메일 및 팩스

(6) 심사탈락업체 보험료 자부담액 환불(협회→회원사)

- 자부담액 환불기한 : 심사결과 후 5 영업일 이내
- 환불방법 :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

### 3. 문의

- 신청/접수 관련 :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-5114
- 보험상품관련(보상여부, 면책사항 등) : 무역보험공사 1588-3884 .끝.